

정부는 **CI** 대규모 유출의 대책을 마련하라!

- **CI**제도가 계속되는 이상 유출사고는 계속될 것입니다!
- **CI**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 규모가 1953만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유출된 개인정보 중에는 우리의 ‘온라인 주민등록번호’, ‘제2의 주민등록번호’나 마찬가지로 **CI**가 포함되어 있어 큰 위험과 피해가 예상됩니다.*

CI는 유일무이한 나의 온라인 주민번호입니다

2024년 모두투어, 2025년 롯데카드, 2026년 티빙과 CJ ONE ... **CI**가 계속 유출되고 있으며 그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롯데카드에서는 **CI**와 주민번호가 짝으로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CI는 국민의 표준식별번호인 실제 주민등록번호를 국가가 정한 공통적인 기준에 따라 88자리 디지털코드로 변환한 것입니다.

즉 **CI**는 주민번호처럼 사람마다 고유하며 다른 유출 정보와 결합해 신원 특정에 악용될 위험이 매우 큼니다.

인터넷 기업들이 **CI**를 필수정보로 수집하였다가 유출시켰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CI**가 언제 생성되었고 인터넷 기업들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아예 선택할 기회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기업들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CI**를 ‘필수정보’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고객을 편리하게 식별하고 제휴사와 공유하기 위하여 **CI**를 필수적으로 처리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CI**는 결코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정보가 아닙니다. **CI**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것은 결코 우리 정보주체를 위한 편의가 아니며 한국 인터넷 기업들의 편의일 뿐입니다. 예컨대 티빙 서비스의 본질은 인터넷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이 서비스 제공에 **CI**가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해외 인터넷서비스를 보십시오.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나 그 조합 등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번호처럼 평생 변하지 않으면서 한번 유출되면 피해가 막대한 표준 국민식별번호를 인터넷 서비스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유일무이한 국민식별번호는 비밀로 취급되고 그 이용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한국의 인터넷서비스만 기업 편의를 위하여 일방적으로 **CI**를 처리하다가 급기야 유출시킵니까?

변하지 않는 **CI**가 유출되면 평생에 걸쳐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것은 우리 이용자들입니다.

국가는 **CI** 유출 사고와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한때 주민번호는 대규모 유출 사고의 단골이었습니다. 막대한 유출이 계속되던 끝에 주민번호는 최근에서야 법적 근거가 없는 일반 인터넷 서비스에서 이용이 금지되었고 유출 피해자에게는 주민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CI도 온라인 주민번호로서 마찬가지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인터넷 서비스에 필수적인 정보도 아닌데 일방적으로 **CI**를 생성하고 공유하는 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인터넷 기업들은 유출 피해자의 **CI**를 즉각 삭제하거나 그 처리를 정지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불필요한 **CI** 수집을 중단해야 합니다!

국가는 인터넷 기업들이 **CI**를 필수정보로 수집하였다가 유출시킨 실태를 조사하고 **CI** 변경을 원하는 사람의 **CI**는 변경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터넷 기업들이 과도하게 **CI**를 수집하지 않는지 감독해야 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CI**를 폐지하고 인터넷 본인확인 제도를 개인정보 친화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이번 대규모 **CI**유출 사고로 향후 어떤 피해가 어떻게 돌아올지 예측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인터넷 기업들이 **CI** 제도를 자기 이용자를 식별하고 기업들간에 제휴하기 위해 편리하게 사용해 온 만큼 저절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동시다발 민원제기로 **CI** 대책을 요구합시다!

▶ **CI** 제도의 실태를 조사하고 폐지를 요구하는 민원 넣기

- 민원 넣을 곳: [국민신문고](#)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민원대상기관(처리기관): 중앙행정기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목소리가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나의 민원 공개”는 “예”로 표시해주세요!
- 민원내용(예시)

민원제목: **CI** 유출에 대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 1) 인터넷 기업들이 **CI**를 필수정보로 수집하였다가 유출시킨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 2) 유출 기업들이 **CI**의 삭제나 처리정지를 요구하는 이용자의 요구를 이행하도록 행정지도하십시오!
- 3) 유출된 저의 **CI** 정보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 4) 장기적으로 인터넷 기업들을 위하여 일반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낳는 **CI** 제도를 폐지하십시오!

(그림 보고 따라하기)

국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들겠습니다

민원사례검색

민원을 신청하시기 전에 민원 사례를 검색



민원신청



민원상



부패·공익 신고



적극행정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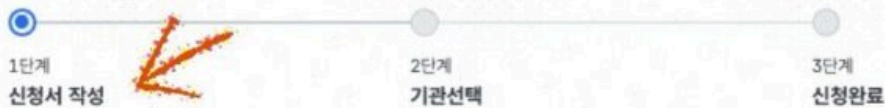
민원신청

국민신문고는 범정부 국민소통창구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 요구 등

※ 부패·공익신고, 청탁금지법 위반 및 행동강령 위반 관련 신고는

메인 화면의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신고자 보호 및 보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필수)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 기간
성명, 주소, 연락처	민원 처리	10년 고충민원 준영구

※ 자동수집항목: IP(Internet Protocol)주소, 이용내용의 기록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민원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항목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안함 ☒ 동의



민원 구분

☒ 일반 민원 ☐ 제보성 민원 ☐ 자동차관리법 위반신고 ☐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

※ 신청하실 민원의 유형을 선택해주시시오.



민원내용

※ 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 고소장 등 법정서식이 필요한 신청은 해당 기관에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용카드 결제거부, 탈세제보신고는 [국세청 홈\(손\)택스로 접속> 상담/제보\(클릭\)](#)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로그인 유지시간은 120분이며, 민원 내용을 자세히 작성해주시면 원활한 민원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신고에 따른 처분가능 기간 변경 안내](#)

민원 제목*

CI 유출에 대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32/200)

민원 내용*

- 1) 인터넷 기업들이 CI를 필수정보로 수집하였다가 유출시킨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 2) 유출 기업들이 CI의 삭제나 처리정지를 요구하는 이용자의 요구를 이행하도록 행정지도하십시오!
- 3) 유출된 저의 CI 정보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 4) 장기적으로 인터넷 기업들을 위하여 일반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낳는 CI 제도를 폐지하십시오!



처리기관 직접 선택

※ 민원은 소관기관으로 이송되거나 여러 기관으로 배정되어 처리될 수 있습니다.

기관분류 ☒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교육기관 ☐ 공공기관 ☐ 헌법기관 기관검색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국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데이터처
국가보훈부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예산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산림청	산업통상부
새만금개발청	성평등가족부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나의 민원 공개(필수) ⓘ

☒ 예 ☐ 아니요

민원 처리 결과 및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비공개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단, 공개를 선택하더라도 민원 내용에 개인정보 등 공개 대상이 아닌 내용이 포함되어있거나 공개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민원처리자가 비공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공개에 동의하시면 아래와 같이 민원 관련 내용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 공개장소: 국민신문고 이용기관의 누리집(홈페이지), 「국민신문고」누리집(홈페이지), 「공공데이터포털」민원분석정보 유사사례 OpenAPI
- 공개목적: 정책 질의응답 및 유사한 민원의 답변 참고
- 공개항목: 민원내용, 민원답변
- 공개기간: 민원 처리 완료일로부터 2년간

※참고: CI 유출기업에 CI정보의 삭제 또는 처리정지를 직접 요구할
분은 다음 절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기업 민원 넣을 곳: 인터넷서비스의 1:1 고객센터 ※회원 로그인 이 필요합니다
(예) 티빙의 경우: <https://www.tving.com/help/qna>
- 민원 내용: ※본인확인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저는 귀사 이용자 000 입니다 (아이디:)
귀사가 수집하여 처리중인 저의 CI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삭제하거나 그 처리를
정지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 만약 CI정보 삭제 또는 처리정지가 거부되면 개인정보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면 아래 제안단체에 문의 메일을 주세요!

인터넷 기업들이 CI를 필수정보로 수집하였다가 대규모로
유출시키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이상한 CI 제도의 폐지와 개선을 요구해야 할 때입니다

2026년 6월

제안자: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
문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contact@digitaljustice.kr

